

2019 정책Brief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본 정책브리프는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를 중심으로' 연구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연구진

이주연_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경옥_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훈_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CONTENTS

01 연구배경 및 목적	02
02 이혼위기가족 관련법과 지원서비스 현황	03
03 전북 이혼관련 현황	04
04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정책적 욕구	06
05 전북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09

1. 연구배경 및 목적

-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 등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은 의도적인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 전북 이혼건수는 2018년 기준 3,934건(조이혼율¹⁾ 2.1건, 유배우이혼율 4.5건)으로 전년대비 6.4%(236건) 증가
-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혼사유의 67% 이상이 '성격차이'와 '기타'라는 점, 이혼으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이 매년 50명 이상(전북 전체 요보호아동 발생원인의 20% 이상 차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이혼 이후 높은 후회와 이혼만족도는 저조하다는 점임
 - 이혼사유 중 '성격차이'는 전북 49.2%(1,821건)로 전국(43.1%)에서 가장 높음. 2위 '기타' 18.1%(670건), 3위 '경제문제' 9.8%(362건)를 차지함(통계청, 2018. 3)
 - 이혼 이후 남성의 40.5%가 후회했고, 혼인 3년 미만의 신혼부부(34.8%)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50% 이상)의 후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혼만족도가 저조한 이유는 이혼 진행과정에서 이혼 관련 정보부족과 이혼 이후의 사후대책 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함으로 나타남²⁾
-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 이혼 진행과정 중 이혼에 대한 재숙고와 이혼준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 및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원서비스 방안이 필요함
 -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시각, 준비와 대책없이 황급에 총동적으로 가족해체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는 시각,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부부관계가 와해된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 등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다양함
 - 이혼이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크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라고 여김
 - 또한, 이혼은 영유아자녀의 심리·정서 발달문제를 초래하고, 청소년자녀의 비행, 모자가정의 빈곤화(빈곤 아동의 30% 이상이 이혼한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등 취약 및 위기가족을 양산함
 - 이와 같이 이혼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사회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비용을 적지 않게 발생시키는 등 개인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만큼 심각함
- 본 연구는 협의이혼 진행과정에 있는(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이혼위기가족 대상 이혼원인과 그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통해 지원서비스와

1) 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 유배우이혼율: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

2) 전영주 외(2009), 협의이혼상담 사례연구: 변화유발요인과 효과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17(2), 67-91.

미성년자녀 복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협의이혼 진행 절차 과정 중에 지원되고 있는 현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움받고 싶은 지원서비스와 이혼 이후 생활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을 파악함
- 미성년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하여 실행될 수 있는 지원서비스 방안을 모색함

2. 이혼위기가족 관련법과 지원서비스 현황

◎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해체 예방, 이혼예방 및 이혼위기가정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해체 예방, 이혼예방 및 이혼위기가족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음. 즉, 이혼 전·후의 가족대상 부부간 갈등해결 및 관계증진을 위한 상담,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한 이혼과 이혼 후 가족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가족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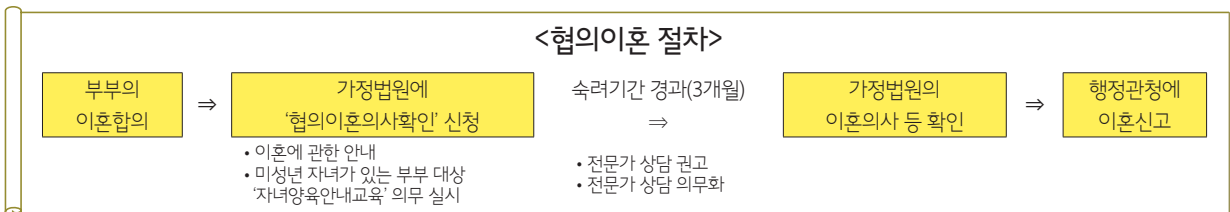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또한,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해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마지막으로 이혼한 가족에 대해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해야 함

• 민법 : 협의이혼에 대한 규정

-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 제836조) :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협의이혼의 문제점은 ① 다수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두고 있고, ② 이혼의사만 서로 일치하면 신속·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소홀히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③ 충동적 이혼이나 홑김에 하는 이혼을 부추겨 준비 없는 이혼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있음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진행 절차 내에 자녀양육안내교육, 의무상담, 숙려기간 및 숙려기간 동안 장기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화되어야 함



◎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 법무부 : 협의이혼 진행 절차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 ④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교육** :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는 미성년자녀의 복지 도모를 위해 이혼에 관한 안내 시 자녀양육안내교육 필수 이수
 - ⑥ **이혼숙려제도**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함. 자녀보호, 혼인 유지와 문제 해결, 이혼결정에 대한 재숙고, 이혼당사자 보호, 총동적·화합에 하는 이혼 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 ⑦ **상담권고 및 (의무)상담지원 제도** : 이혼이 당사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지원이 미흡하여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 이혼당사자와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상담권고 및 (의무)상담지원제도가 도입됨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받는 서비스
 - ⑧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자녀의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복지 증진을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제공
 - ⑨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⑩ **긴급위기가족지원사업** : 이혼신청 중인 가족대상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지원
 - ⑪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욕구와 특성에 맞게 지원서비스 제공 및 집중 사례관리

3. 전북 이혼관련 현황

◎ 연도별 및 시군별 이혼 현황

- 2018년 전북의 이혼은 3,934건으로 전년보다 236건(6.4%) 증가하였고, 한 해 동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는 하루 평균 10쌍 이상으로 나타남
- 전체 이혼건수 중 협의이혼은 77.2%로 재판이혼(22.8%)의 4배임. 협의이혼이 압도적으로 높고, 협의이혼의 1/2이상이 미성년자녀가 있었음

〈표 1〉 이혼건수, 조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2008~2018)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북	이혼건수(천건)	3.8	4.3	3.9	4.2	3.9	4.1	4.1	3.8	4.0	3.7	3.9
	조이혼율	2.0	2.3	2.1	2.2	2.1	2.2	2.2	2.0	2.1	2.0	2.1
	유배우이혼율	4.8	5.0	4.7	4.7	4.6	4.7	4.6	4.4	4.4	4.4	4.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년 12월말 기준(2019.3.20. 발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시군별 이혼현황을 보면, 전주 1,251건(전북 총 이혼건수 중 31.8% 차지)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77건(17.2%), 군산 659건(16.7%), 정읍 242건(6.1%) 순으로 나타남
- 조이혼율은 군산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익산 2.3건, 정읍 2.2건, 완주 2.1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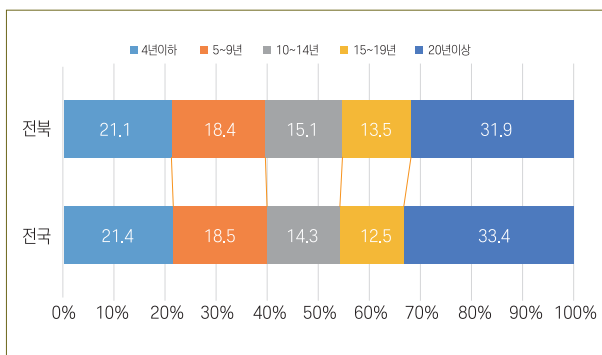
〈표 2〉 전라북도 시군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8년)

구분	전국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혼건수	108,684	3,934 (100.0)	1,251 (31.8)	659 (16.7)	677 (17.2)	242 (6.1)	201 (5.1)	186 (4.7)	204 (5.2)	55 (1.4)	52 (1.3)	43 (1.1)	46 (1.2)	57 (1.4)	125 (3.2)	136 (3.5)
조이혼율	2.1	2.1	1.8	2.4	2.3	2.2	1.9	2.0	2.1	1.7	1.2	1.6	2.0	1.3	2.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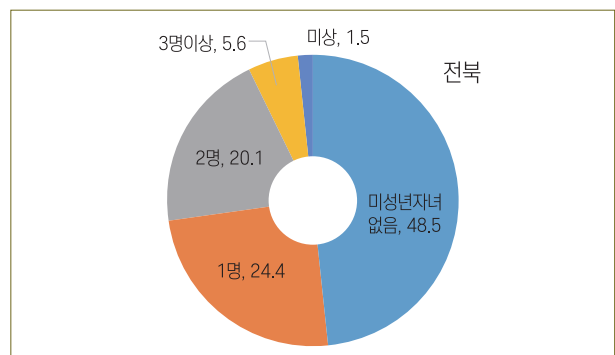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년 12월말 기준(2019.3.20. 발표).

◎ 이혼 현황 및 특성

- **(평균 이혼연령)** 남성 48.03세, 여성 43.84세, 전국대비 남성은 0.25세, 여성은 0.91세가 낮음
- **(혼인 지속기간)** 혼인 '20년 이상 부부' 이혼이 31.9%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 이혼이 21.1%로 뒤를 이음
 - 혼인기간 '10년 이하' 이혼은 전체 이혼의 약 40.0%, 이혼가족 자녀 대부분이 10세 미만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녀 유무에 따른 이혼비율)** 전체 이혼건수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은 51.5%(1,969건)를 차지함
 - 미성년자녀가 1명인 이혼비율은 24.4%, 2명은 20.1%, 3명 이상은 5.6%였음
 - 2018년 전북지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5.93%p가 감소했으나, 전국 비율보다 4.54%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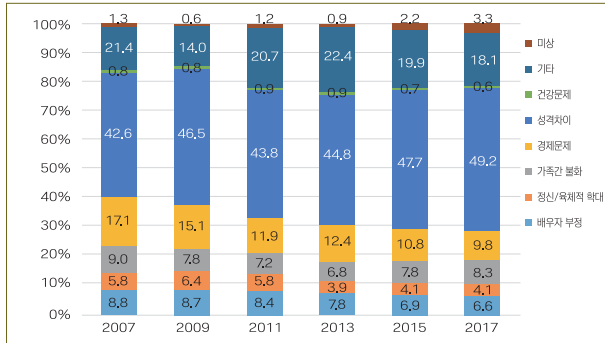
〈그림 1〉 전국-전북 혼인지속기간별 이혼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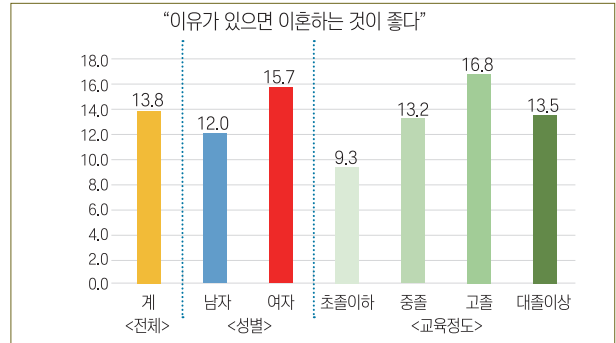
〈그림 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비율(2018)

- **(이혼사유)**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기타', '경제적 문제'가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 간 불화'와 '배우자 부정'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이혼에 대한 가치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한다'가 13.8%로 이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임. 성별로 남성 12.0%, 여성 15.7%로 이혼에 대해 여성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그림 3〉 전북 연도별 이혼 사유의 변화(2007~2017)



〈그림 4〉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2018)

4.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와 정책적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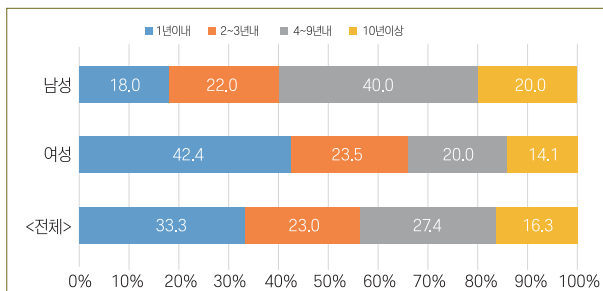
◎ 조사개요

- 전북지역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18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18.7.14 ~9.8) 설문조사(최종 200부 분석)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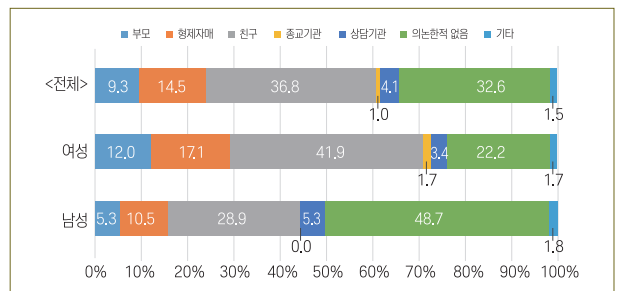
◎ 이혼관련 전반적 실태

이혼 전 실태

-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시점)** 결혼 후 평균 4.68년째부터 결혼 및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함. 여성은 평균 3.96년째부터, 남성은 5.90년째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함
- **(결혼 및 부부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자)** 36.8%는 '친구'와 의논하였고, 32.6%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함. 여성은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이 41.9%로 가장 높고 남성은 '의논한적 없다'는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음



〈그림 5〉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인식 시점



〈그림 6〉 결혼생활 문제에 대한 의논 대상

- **(결혼 및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4%)은 문제해결을 위해 부부가 대화하는 것으로 그침. 상담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비율은 11.7% 뿐이었음. 반면, 전혀 ‘노력안함’도 26.6%로 나타남
- **(이혼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 ‘자녀걱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남. 여성은 ‘자녀걱정’ 다음으로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이 높았고, 남성은 ‘자녀걱정’ 다음으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나 부부간 차이를 보임

〈표 3〉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걱정되었던 점

아내	순위	남편
자녀에 대한 걱정	1위	자녀에 대한 걱정
혼자 자녀양육과 살림에 대한 걱정	2위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3위	이혼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4위	결혼실패자가 되기 싫어서

협의이혼 진행과정

-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인 이유)** ‘사고방식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은 ‘사고방식 차이’, ‘외도’, ‘가정에 무관심’ 순으로, 남성은 ‘사고방식 차이’, ‘신뢰감 상실’, ‘의견불일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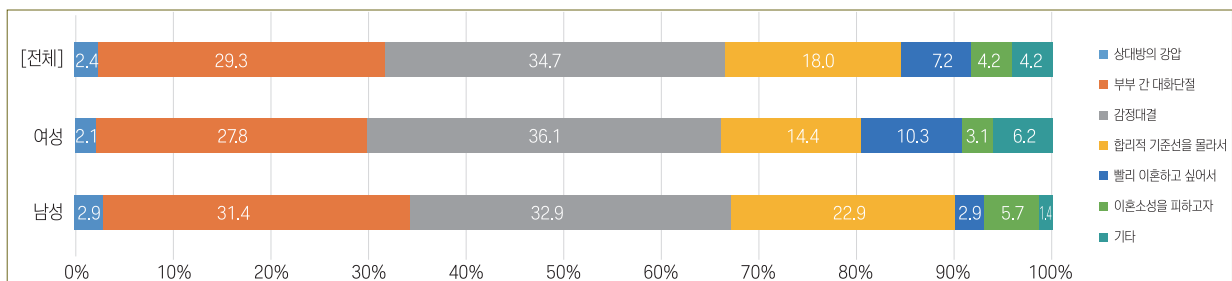
〈표 4〉 이혼을 결심한 직접적 이유

아내	순위	남편
사고방식의 차이	1위	사고방식의 차이
외도	2위	신뢰감 상실
가정에 무관심	3위	의견 불일치
언어폭력	4위	배우자의 이혼요구
배우자가족과 갈등	5위	외도

〈표 5〉 협의이혼과정에서 필요로 한 정보

아내	순위	남편
이혼 후 자녀양육 대책	1위	이혼 후 자녀양육 대책
자녀를 이해시키는 방법	2위	자녀를 이해시키는 방법
자녀의 심리상담	3위	자녀의 심리상담
이혼 후 경제대책	4위	협의이혼 절차
이혼 관련 법률	5위	이혼 관련 법률

-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필요로 한 정보)** ‘이혼 후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이혼을 자녀에게 이해시키는 방법’, ‘자녀의 심리상담’ 순으로 나타남
-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응답자의 34.7%가 ‘감정대결’, 29.3%가 ‘부부 간 대화단절’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 여성은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남성은 ‘합리적 기준을 몰라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7〉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이혼 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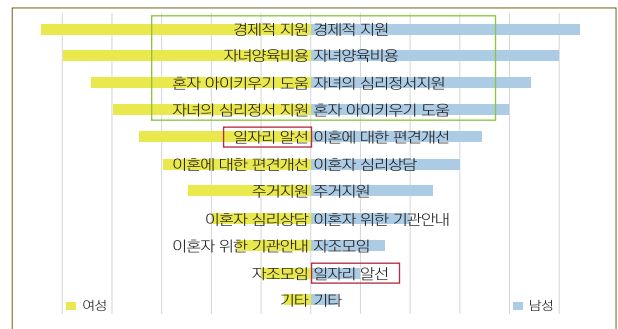
- **(이혼 후 예상된 걱정·어려움과 이에 대한 준비 정도)** ‘자녀 정서문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문제와 자녀양육으로 나타남. 반면, 준비(대책마련)정도는 ‘편견’에 대한 준비가 가장 취약했고, 경제문제, 상실감과 외로움(2.54점) 순으로 나타남
- **(이혼 후 적응을 위해 도움 받고 싶은 것)**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 지원’, ‘자녀 심리정서 지원’ 순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은 ‘일자리 알선’을 가장 필요로 함

〈표 6〉 이혼 후 예상되는 어려움과 대책(4점기준)

구분	어려움(걱정되는) 정도				대책마련 준비도			
	전체	여성	남성	t	전체	여성	남성	t
경제적 어려움	2.77	3.07	2.32	521***	2.51	2.60	2.38	1.68
자녀 심리 정서 문제	3.16	3.23	3.08	1.31	2.58	2.69	2.41	2.12*
자녀양육 및 교육	2.77	2.81	2.70	.78	2.65	2.79	2.41	2.69**
상실감과 외로움	2.58	2.67	2.45	1.41	2.54	2.69	2.32	2.44**
주거문제	2.51	2.65	2.30	2.13*	2.78	2.85	2.66	1.22
주변인의 편견	2.55	2.68	2.36	2.07*	2.50	2.60	2.34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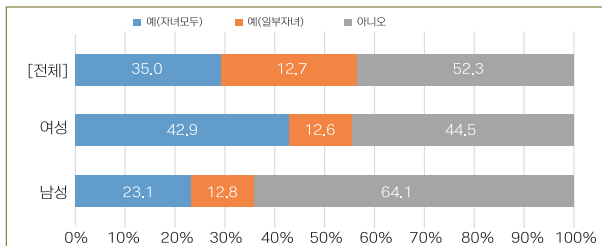
*p<.05, **p<.01, ***p<.001

〈그림 8〉 이혼 이후 적응을 위한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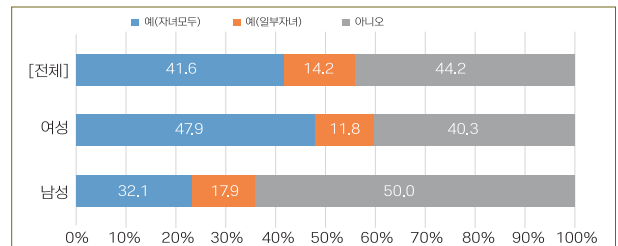


자녀관련 사항

- **(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응답자 중 52.3%(남 64.1%, 여성44.5%)가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음
-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알림 여부)** 44.2%(남 50%, 여 40.3%)가 이혼결정을 자녀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부모이혼에 대한 자녀의견 청취 여부



〈그림 10〉 이혼결정 자녀에게 알림 여부

지원정책 평가

- **(법원연계 상담위원과의 상담경험)** 응답자 중 52.5%가 법원 상담위원에게 상담받은 경험이 ‘없다’고 함.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 상담횟수는 ‘1번’이 78.1%로 가장 많았고, 상담만족도는 2.86점(4점 기준)이었으며, 남성(3.10점) 만족도가 여성(2.74점)보다 높게 나타남

- **(상담 받지 않은 이유)** ‘상담실시에 대한 정보 부족’이 40.8%로 가장 높았고, ‘사생활이 알려 질까봐’, ‘도움 안 될 것 같아서’가 각각 15.8%로 나타남. 특히 남성은 ‘상담정보 부족’(48.1%), , 여성은 ‘사생활이 알려 질까봐’(20.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녀양육안내교육의 만족도)** 평균 3.05점(4점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담 및 교육의 도움정도)** ‘자녀양육안내교육’과 ‘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3.06점)’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성별로는 여성이, 혼인지속기간별로는 4년 이하 부부에게 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남

5. 전북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공공기관 연계 부부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필요

-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은 서로간의 성격이해, 대화단절 예방, 갈등·분노조절 등을 해결해 주는 다채로운 교육과 전문상담 서비스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요구함
- 부부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전문상담은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춰 기초이론부터 경험과 실습중심으로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직장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필요
 - 본 연구결과, 부부 갈등 문제와 이혼 결정 시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상담받으며 갈등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혼을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쉽고 성급하게 해결·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리고 이혼위기는 여러 해전부터 성격차이, 대화단절, 갈등반복과 장시간의 갈등 누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된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부족함
 - 이에 부부갈등 해결과 이혼 결정 시 전문가상담과 교육을 받으면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갖으며 갈등해결과 이혼을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필요 있음



▶ 군산시 ‘(전문상담기관으로) 찾아오는 부모·자녀 성격검사 운영’

어린이집 재학 자녀 대상 부모·자녀 성격유형검사지(MBTI)와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 안내 배부 → 성격유형검사 체크 후 검사 결과와 해석은 지역 내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확인 → 부부간 및 자녀간 성격차이에 대한 이해와 갈등문제에 대해 접근 → 심화된 부부갈등을 자연스럽게 전문상담으로 유도 → 부부갈등 예방·성격이해 기대효과 발생

◎ 이혼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제고 및 협의이혼 취하자 집중관리 필요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이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냄. 건강한 이혼을 위해 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무상담제와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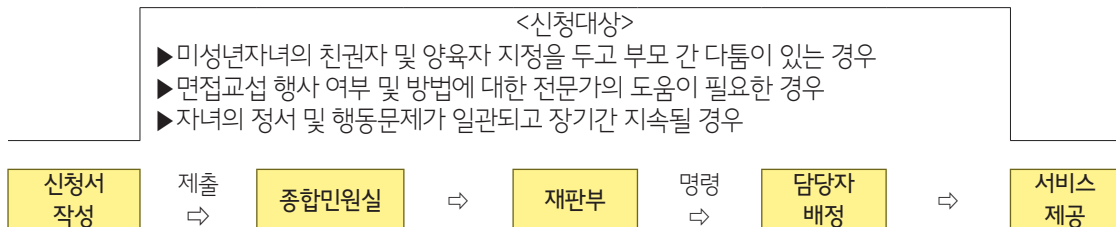
- 그 밖에 '자녀양육안내 길라잡이' 리플렛 제작, 이혼과 양육관련 참고도서 소개, 이혼위기가정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이혼 후 자녀적응을 돕는 부모행동 등 안내·홍보가 필요함

• 부부 문제는 동일 내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반복·누적·심화되어 이혼위기에 이르게 됨. 협의이혼 취하자의 경우, 협의이혼을 재신청하러 오기 전에 그들이 지닌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적이고 지속적 지원·관리가 필요함

- 협의이혼 취하자 대부분은 배우자 한쪽의 이혼 반대 혹은 이혼결정이 차후로 미루어진 경우로 부부관계 개선이나 회복의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중요한 시점임

<표 7> 숙려기간 효율적 활용 및 협의이혼 취하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안)

지원서비스	주요내용
의무상담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연계 전문상담 기관 위탁 의무상담서비스 제공 - 무료로 기본 상담 총 3회 기지원, 상담 추가 요청자 2회 추가 지원 - 총 5회의 상담 이외 추가적 상담 요청 시 자가 부담
자녀양육안내 심화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연령대별 구분에 따른 자녀에게 이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교육과 이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동과 역할 관련 안내 교육
부부감정치유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에 대한 부부 서로의 감정과 갈등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상담 제공
부부캠프(행복한 내일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위기가족 대상 의사소통 훈련,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 마련, 부부관계회복 도움 등
협의이혼 취하 부부 집중 및 지속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개월간 부부의 미해결된 갈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 지속적 전문상담과 교육 실시



<그림 11>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 자녀양육안내교육' 진행절차 사례

◎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 정보 안내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정보접근성 강화

- 협의이혼 신청자는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 정보를 쉽게 어디서든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접근성 강화가 요구됨
- 전문상담기관과 법률정보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법원 내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로 지리적·심리적 접근성 확대 강화 필요

◎ 미성년자녀 복리 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 협의이혼 진행과정 중 부부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이혼 이후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강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지급액, 지급인과 지급받는 사람, 지급방식, 지급일 등)’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일자, 시간, 면접장소 등)’ 등을 부부간의 감정적 싸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부모임을 생각하면서 자녀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서비스가 요구됨

◎ 이혼위기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법원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이혼위기가족에게 다양한 정보와 통합적·체계적·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과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법원은 의무성과 강제성이란 특수성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어 법원의 권고 및 안내에 대해 협의이혼 신청자들은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 등을 충실히 순차적으로 밟아가야만 이혼이란 목적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음
 - 법원이 지닌 이러한 특수성을 연계·활용하여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지원서비스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 있음

◎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지속적인 연구 필요

- 협의이혼 신청자 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 뿐 만 아니라 실태 관련 자료가 부재함. 이혼위기가족(협의이혼 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이혼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다층적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가 가능해져 실제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대응책 마련이 될 것임

〈참고문헌〉

- 박복순, 박선영, 신연희(2011). 협의이혼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성주, 박재황(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3(1), 47-73.
- 오세정(2015). 협의이혼 상담을 통한 이혼위기 부부의 갈등변화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 원성희, 김수연(2009). 협의이혼상담 사례연구: 변화유발요인과 효과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17(2), 67-9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통계청(2019.3.20.) 2018년 혼인이혼통계



정책Brief
2019. 05. 30 vol.31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jthink.kr